# 제조 소기업 대상 여부

## 1. 제조업 해당여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뻘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줄액 등 10억원 이하

※ 참조: 제조소기업 규모 기준(별첨1)

## 기업의 주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 ① 주 업종 확인

업종 구분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분류가 애매할 경우 통계청에 개별 문의(뒷장 참조)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을 원칙으로 하되, 실질 영업활동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영위사업 기준 작성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작성**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제품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여야 제조업으로 판단

### ② 주 업종의 10차 산업분류코드 확인

확인한 주 업종에 해당하는 10차 산업분류코드의 2자리 확인 제조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제조 소기업 대상 여부

## (참고) 업종분류 검색방법(통계분류포털)



## 업종분류 검색방법

### ① 통계분류포털 접속

통계분류포털 접속 후 경제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검색 클릭

## 업종분류 검색하기(클릭)

② 주 업종의 분류 검색

주 매출 업종을 "검색어"에 입력 후 검색

③ 대분류 확인

가장 적합한 색인어를 확인한 후 대분류의 **C.제조업** 해당여부 확인

④ 분류코드 앞 2자리 확인

해당 분류코드의 **앞 2자리가 10~34** 인지 확인

⑤ 최종 해당코드 작성

대분류의 알파벳(C)와 분류코드 앞 2자리를 합친 C10~C34가 업종 분류기호

# 제조 소기업 대상여부

## 2.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 필수

#### ※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밀)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15년 이전 설립기업	- '16년, '17년, '18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16년 설립	- ^17년, ^18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17년 설립	- '18년 매출액
'18.2月~'18.11月 설립	- '18년 매출액을 '18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설림월의 다음달부터 설림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18.12月 설립	- '18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9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0원 기입

# 평균 매출액 및 제조 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

#### ① 평균 매출액 산정

평균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 1차 접수기업: 16, 17, 18년 매출액 평균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연도 매출액 "0"으로 산정(지원가능)

16년 이후 설립기업은 설립일자별 매출액 산정방법 확인 후 평균매출액 산정

18년 설립기업의 경우 첨부의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매출액 계산

### ② 제조소기업 대상여부 확인

제조소기업 분류기준에 따라 각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기준(별첨1) 확인 후 제조소기업 대상여부 확인

설립연도	연도별 매출액 기입방법
~15년 설립	16, 17, 18년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입
16년 설립	16년 0원 17,18년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입
17년 설립	16년, 17년 0원 18년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입
18년 설립	16년, 17년 0원 18년 첨부엑셀파일로 도출된 매출액 기입
19년 설립	표준재무제표가 없음으로 16, 17,18년 모두 0원 기입

# 참고서류

## 별첨1. 제조 소기업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 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